

보육예산의 지역 여성 경제활동 촉진 효과 제고 방안

수행과제명 : 성인지예산 제도화 방안 연구(Ⅳ)-지방자치단체의 보육예산과 지역 여성경제활동
과제책임자 : 이택면 연구위원 Tel : 02-3156-7167, e-mail : onbike@kwidimail.re.kr

요 약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촉진을 주요한 정책 목표 중 하나로 하는 보육정책의 추진을 위해 할애된 예산이 과연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는지를 지방정부 수준에서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다양한 방안을 제시함.

1. 정책의 목적 및 필요성

- 광역자치단체 수준에서 2005년에서 2009년간 예산의 급격한 증가와 그보다 더 가파른 보육료 지원 예산의 증가가 있었지만 이것이 지역 25세이상 39세 이하 여성들의 취업 증가를 동반하지 못했으며, 2008년 기준 보육예산을 더 많이 쓴 기초자치단체에서의 미취학 아동을 둔 여성과 그렇지 않은 여성 간의 경활참여 확률 격차가 보육관련 예산을 평균 수준만큼 쓴 지역과 다를 바 없었음.
- 이같은 분석 결과들은 지방정부의 보육관련 예산의 편성과 집행이 여성의 취업 인센티브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재편되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함.

2. 정책의 추진방향

- 취업한 여성의 보육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것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개발해야 함(시간연장보육, 시간제 보육 등).
- 영아전담 시설(영아 수용인원 10인 내외) 확충, 기존시설의 영아 보육 역량 강화 지원, 등 영아보육을 활성화시켜야 함.
- 아이돌보미 이용료는 대폭 낮추면서 돌보미 활동수당은 높이는 등 아이돌보미 사업의 취업모 친화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음.
- 보육료 지원 정책의 수정을 통해 취업한 한부모 가구나 맞벌이 가구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리고, 저소득층 대상 지원에 있어서는 소득구간의 정밀한 재설계와 구간별 지원액 감소폭 재조정 등을 통해 취업 인센티브를 유지해 주어야 하며, 취업여성 뿐 아니라 취업을 희망하여 구직등록을 하거나 정부의 취업지원 서비스 수혜자로 등록한 여성에게도 보육료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직장보육에 있어서는 근로자 개인이 보육시설을 선택하여 아동을 맡긴 후 보육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업주로부터 환급받게 하고 정부는 사업주에게 보육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을 모색하는 등, 직장보육 확대 정책의 내실화가 필요함.
- 지역 별로 보육 공급률과 이용률을 파악하여 잠재 보육수요에 비해 서비스 공급이 현저히 제한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현존 시설 지원과 국공립 시설 중심의 신설 지원을 위한 예산을 타 지역보다 더 높은 비율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

- 사회복지비 지출 예산 증가를 구성 요소별로 분해했을 때, 보육부문의 예산 증가 뿐만 아니라 여성 취업지원 및 인력개발 관련 예산의 동반 증가가 이루어져야 함.
- 중앙정부의 보육예산 국고 보조 비율이 지역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하여 보다 더 탄력적으로 정해져야 함.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에 대해서는 국고보조 비율을 더 높여야 하고, 현재 서울과 비서울지역으로만 구분되어 시행되고 있는 국고보조비율을 지역별로 더 세분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음.
- 지방 보육위원회를 활성화하여 지역 보육의 현안을 파악하고 각 부처별 보육사업을 지역 실정에 맞게 조정하고 정책 추진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함. 이를 위해 지방보육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을 명확히해야 함. 보육위원으로는 보육관련 전문가 뿐만 아니라 여성 인적자원개발 및 취업지원 관련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하여야 하고, 보육지원 사업을 통한 여성 경제활동 촉진 효과가 중요한 심의 의제 중 하나로 정기적으로 논의되어야 함.

3. 정책효과

- 지방 정부 보육예산의 효과성 제고
- 지역 여성인적자원개발에 있어 광역자치단체의 역할 평가 및 발전
- 광역자치단체가 보육관련 지출을 통해 지역의 여성 노동시장을 활성화할 조건 발견

▶ 주관부처 : 보건복지부
▶ 관계부처 : 여성가족부
